

1. 개요

(주)티앤에프는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 모든 사업장 및 협력사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전세계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이행할 것이다.

당사는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등 인권과 노동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선언한다. 본 인권헌장은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임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티앤에프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원칙

용어	정의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당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피해 사례 발생시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징계 및 구제조치를 진행한다.

<p>인도적 대우</p>	<p>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p>
<p>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p>	<p>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p>
<p>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p>	<p>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p>
<p>산업안전 보장</p>	<p>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p>
<p>지역주민 인권 보호</p>	<p>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p>
<p>고객 인권 보호</p>	<p>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p>